

보도시점 4. 14.(월) 석간 < 4. 14.(월) 06:00 >

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 2025년 명문장수기업 모집(4.14~5.13) -

-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모집
- 자금·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선정 기업에 현판과 확인서 발급, 상징(마크) 사용권 부여 등 혜택 부여
- 신산업 창출에 따른 지원 업종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4월 14일(월)부터 5월 1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 총 53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 총 53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23) 6 → ('24) 10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화)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기술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바우처 등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제공,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등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GDP 세계 12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명문장수기업의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중소기업제도과	책임자	과 장	오보연 (044-204-7451)
		담당자	사무관	황조인 (044-204-7452)
			주무관	최준영 (044-204-7455)

참고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도입배경)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 (개념)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 * 단,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확인요건) 필수지표*를 만족하고,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 ① 최근 5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것 ②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③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 판결 이력이 없을 것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16.9, 중소기업진흥법) → 최초 선정('17.2) → 중견기업으로 확대('17.6) → 중견기업 매출 상한요건(3천억원) 폐지('21.9) → 중견기업 대기업 매출 완화(70%이상 또는 1거래사 50%이상 시 제외)('24.4)
- (선정현황) '17년부터 '24년까지 총 53개사 선정(중소38, 중견15)
 - * 총 53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23) 6 → ('24) 10

□ 확인절차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우대내용

- (자긍심 고취 등)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현판 제공, 언론·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등
- (지원사업 참여우대) R&D, 지역특화사업,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참고2

국민추천제 운영절차

- (추천방법)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민원참여 → 국민참여 → 국민추천 → 명문장수기업 확인 → 추천하기 → 추천내용 입력 → 추천완료 및 메시지(추천번호, 문자메시지) 확인

<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예시 >

< 추천내용 입력사항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동의서 확인 후 '동의' 체크

② **추천인 정보 입력**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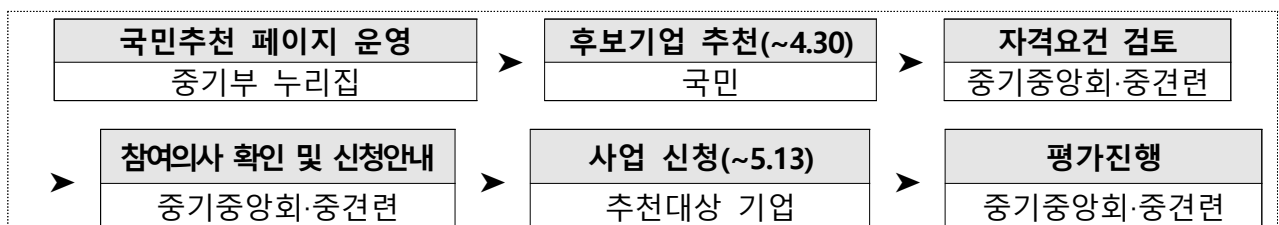
③ **피추천인(기업) 정보 입력**

▶ 기업명, 연락처, 주소지, 창업연도, 업종, 추천사유 등 기입

⇒ 저장 및 최종 제출 완료 (추천번호 및 문자메시지 확인)

- (활용방안) 추천대상 기업의 자격요건 (업력 등) 검토 및 참여의사 확인 후 공모접수 안내를 통한 직접 사업신청 유도

< 국민추천제 추진절차 >



참고3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

구분	지 표(점수)		세부기준(안)	비고
장수 (60)	업력(60)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5년 이상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명문 (40)	경제적 기여 (12)	장기고용유지(3)	최근 5년 평균고용률 ≥ 100%	필수지표 외 지표 2개 이상 충족
		매출액증가율(3)	최근 5년 매출액증가율 ≥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3)	최근 5년 영업이익률 평균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3)	최근 5년 부채비율 평균 ≤ 150%	
		법인세납부 실적(필수)	최근 5년 체납 사실 없을 것	
	사회적 기여 (16)	법규준수(필수)	최근 3년간 관련 법규위반으로 법원 유죄 판결 0건,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각 지표별 기본 점수의 가·감점 포함 점수
		임직원 인권존중(1.5)	인권 행동지침,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고용 및 근로조건(2)	노사관계 제도화, 인재개발 노력 등	
		오염방지(2)	대기·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 등	
		지속가능한 자원이용(2)	원부자재,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감축 등	
		안전 및 보건(1.5)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 시행, 산업재해율 등	
		반부패 및 공정경쟁(1.5)	반부패 및 공정경쟁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제품 및 서비스 책임(1.5)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사회공헌(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봉사활동 시간 등	
기업 역량 (9)	브랜드/특허/제품(9)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전략체계, 추진의지 표명, 성과 관리 여부 등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건수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 주력 제품(서비스) 국내·외 시장점유율 신기술·신제품 등 인증 기술·품질 관련 수상 실적		
	기업 혁신 (3)	연구개발비 비중(3)	최근 5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 업종별 평균	필수지표
가점 (6)	수출 기여(3)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 기여(3)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유무	
종합 (106)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가점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			